

[별지 제69호의10서식] <신설 2020. 4. 21.>

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

(년 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1. 신청인	① 상호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사업장 주소	
	⑥ 업태	⑦ 종목

2. 일반과세방식 세액

납부세액			경감공제세액			⑭ 감면대상세액
⑧ 합계	⑨ 예정분	⑩ 확정분	⑪ 합계	⑫ 예정분	⑬ 확정분	

3. 간이과세방식 세액

업종		과세표준				②① 공급대가 (①⑦+①⑨) × 110/100	②② 부가가치율	②③ 세율	②④ 세액
		예정분		확정분					
①⑤ 코드	①⑥ 분류	①⑦ 과세	①⑧ 영세율	①⑨ 과세	②① 영세율			10%	
②⑤ 합 계 (②④의 합계액)									

4. 감면세액의 계산

②⑥ 납부할 세액		②⑦ 비교세액 (②⑤)		②⑧ 감면세액 (②⑥ - ②⑦)	
-----------	--	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*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"②⑥"란에 대한 작성방법에 따른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참고 및 유의사항

- 이 신고서는 개인인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(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.)
-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보아 감면대상 납부할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
작성 방법

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.

2. 일반과세방식 세액

(8 ~ 14)

- 8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㉔란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- 9,10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.
- 11~13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공제세액, 전자신고 공제세액,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,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- 14 "8"란의 세액에서 "11"란의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합니다.

3. 간이과세방식 세액

(15 ~ 25)

- 1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"4 과세표준 명세"의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.
- 16 아래 "22"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.
- 17,18,19,20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"4 과세표준 명세"의 업종별 과세표준을 과세와 영세율 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, 수입금액 제외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- 21 과세분 과세표준("17 및 19") 합계액에 110/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22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5조의4 제3항에 따른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재합니다.

구 분	부가가치율
1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	5퍼센트
2. 소매업, 도매업 및 음식점업	10퍼센트
3. 농·임업 및 어업, 제조업, 숙박업,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	20퍼센트
4. 건설업, 광업, 창고업, 금융 및 보험업, 그 밖의 서비스업	30퍼센트

- 24 "13"의 공급대가에 "14"의 부가가치율과 10%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25 "24"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
4. 감면세액의 계산

(26 ~ 28)

- 26 위 "14"의 감면대상세액 합계분을 기재하되,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(과세표준에는 영세율 대상은 제외하며, 수입금액 제외분은 포함합니다.)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공제세액을 차감한 세액("14")

×

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
합계액
총 공급가액의 합계액

- 27 "26"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28 "26"에서 "27"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.